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세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중과세 예외 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및 감면받은 세액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권한을 추가하며,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징사유 발생 시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보완(안 제19조제2항제3호)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 그 외에는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

나.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권한 추가(안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권한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세무상담을 위해 위촉한 세무사(마을세무사) 운영, 과세전적부심사·이의

신청 과정에서 납세자 지원 및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의결 시 참여 및 의견 제출을 추가

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제56조의2, 제67조 신설)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및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 규정 신설

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안 제66조의2 신설)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안 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 세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조정

바.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56조제2항제5호·제58조제3항제6호·

제63조제1항·제64조제5항)

세무조사 결과통지 예외사유, 이의신청·심판청구 보정요구 규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조항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 경과 통지 규정을 현행화

사.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관련 과세자료 추가(안 별표3)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관련 과세자료를 추가하여 지방세 감면에 활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또는 중과세 예외 적용받은 세액 등(이하 이 호에서 “비과세·감면세액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각각 “비과세·감면세액등”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세무상담을 위해 위촉한 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 7.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1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참여 및 의견 제출

제56조제2항제5호 중 “「국세기본법」 제81조”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

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 3.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4.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제3항제6호 중 “「국세기본법」 제81조”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을 “심판청구를”로 한다.

제7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준용)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행정”은 “지방세행정”으로, “국세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해당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본다.

제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른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1.2”를 “1.0”으로 한다.

별표 3에 제3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시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적용례)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2. (생 략) 3. <u>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u> 등에 대한 추정사유가 발생하여 추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서 <u>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u> 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u>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u> 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2. (현행과 같음) 3. <u>비과세·감면받은 세액 또는 중과세 예외 적용받은 세액 등(이하 이 호에서 “비과세·감면세액등”이라 한다)</u> ----- ----- 가. ----- - <u>비과세·감면세액등</u> ----- ----- ----- 나. ----- <u>비과세·감면세액등</u> ----- ----- -----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단서 신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6. (생 략)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

다
만, 제6호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세무상담을 위해 위촉한 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참여 및 의견 제출

4. (생략)

③ ~ ⑤ (생략)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① (생략)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생략)

<신설>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6.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4.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②
(생략)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
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
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
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
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
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④ 삭제

⑤ ~ ⑦ (생략)

제63조(보정요구) ① (생략)

②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
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
조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했을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
-----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보정요구)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제80
조의2-----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
야 한다.

제64조(결정 등) ① ~ ④ (생략)

⑤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
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
는 기관을,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⑥·⑦ (생략)

<신설>

-----.

제64조(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심판청구를 -----

⑥·⑦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준용)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
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행정”

<p>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생략) <u><신 설></u></p>	<p>은 “지방세행정”으로, “국세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해당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본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른다.</p>
<p>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생략) ② ~ ⑤ (생략)</p>	<p>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 ----- ----- ----- 1. ----- 1.0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p>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p>	
<p>연 락 처</p>	<p>(044) 205 - 3811</p>